

大學評價認定의 효용과 한계성

金信福
(서울大 行政大學院)

1. 머리말

정부는 고등교육의 質的 向上과 대학의 自律性 伸張을 겨냥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大學評價認定制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教育改革審議會의 건의를 받아 들인 것으로 文教部는 1989년 9월에 대통령에 대한 報告에서 1991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대학평가 작업과 관련하여 韓國大學敎育協議會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刊行物과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본격적인 대학평가인정제의 구체적인 適用方式과 그 문제점 등에 관해서는 아직 深層的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평가인정 결과의 活用 可能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性格과 적용 방식을 考察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方案을抽出해 보고 그와 관련하여 提起될 수 있는 批判과 限界性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大學評價認定의 性格과 適用方式

우리나라의 대학평가 활동은 實驗大學 指定과 관련하여 '7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1982년부터는 대학교육협의회가主管하여 많은 개선

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종래에는 단순히 평가에 그친 데 비해서 앞으로는 質的 水準에 대한 公認(accreditation)으로 연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機能과 效用 면에서 커다란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大學評價認定制(accreditation system)는 미리 설정된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의 充實度에 관한 여러 기준들을 개별 대학이나 학과가 어느 정도 充足하고 있는지를 專門性을 가진 機構가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判定해 줌으로써 그에 相應하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하겠다. 대학평가인정제의 실시 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大學間自律的 協議機構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大學主導型으로 발전되어 가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類型이 美國의 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에는 6개의 지역 평가인정 기구가 機關評價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는 學會나 전문가 協會 등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 수는 70여개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평가인정 제도는 개별 대학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自律的으로 대학교육의 質을 규제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介入이 전혀 없다. 따라서 평가인정제의 기능도 외부의 壓力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하고 外部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의 信賴性을 보증함으로써 대학교육의 秀越性을追求하는 데

축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평가인정제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전혀 關與함이 없이 大學主導型으로定着되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共感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경우에 評價認定의 效用도 대학들 상호간에 교육의 질적 수준 면에서 同格으로 인정할 만하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사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대학 사회에서 평가인정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準備態勢(readiness)는 高揚되어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정부가 앞장서서 導入을 추진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사회에서 評價認定制의 效用價值를 實感하고 그것이 무리없이 定着될 때까지는 정부가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選別의 誘因體制(incentive system)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평가인정 체제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그 결과를 행·재정적인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들 간에 善意의競爭을 助長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우리 대학 사회의 여건을 감안한 戰略的인 추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가 결과를 토대로 社會的認定과 行·財政的인 補償을 接木시킨 韓國의 평가인정제인 셈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평가인정의 바람직한 適用方式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평가인정의 종류는 지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해 온 機關評價와 學問領域別評價를 보완·발전시켜 大學綜合評價와 學科評價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정 사업은 지금까지 蕊積해 온 전문성을 살려 대학교육협의회가 담당하되, 대학 종합 평가는 자체에서 실제 작업까지를 主管하고, 학과 평가는當該 분야의 學會 또는 전문 기구에 실무 작업을 위탁하여 총괄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종합 평가의 週期(cycle)는 5년 정도로 하여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 美國의 경우에 평가 주기를 대체로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 그렇게 길게 하면 자칫 不實이 累

積될 우려가 있다. 또 우리 대학들은 교육 여건이 전반적으로 未洽한 상태이므로 평가인정제를 처음 적용하는 데 따른 충격을 最少化하기 위해서는 絶對基準(目標水準)을 漸進的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의 경우에 평가인정의 週期는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學科評價는 週期를 10년 정도로 길게 해야 한다. 학과 평가는 교육 목표와 내용, 교육 운영의 充實度 등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자주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며 關聯學會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인 制約도 무시할 수 없다.

週期를 5년 또는 10년으로 하더라도 모든 대학(교) 또는 학과들을 같은 年度에 평가할 수 없으므로 個別大學들은 평가를 받는 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각 대학(교) 또는 학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자 하는 申請이 特定年度에 집중될 경우에는 대학의 규모 또는 特性別로 유사한 집단(group)끼리 같은 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종합 평가에 적용될 評價準據와 指標體系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試案을 개발하여 대학 사회의 광범한 意見收斂을 통해 修正·補完해야 한다. 대학의 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행·재정 등의 여러 領域別로 평가의 내용과 구조, 評定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 대학 종합 평가에서는 각 대학들의 자체 평가와 自發的인 개선 노력을 助長하는 방향으로 現地訪問評價를 並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시 초기에는 평가 결과를 非公開로 하고 행정적인 자료로 참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가 지표들 중에서 教育與件을 반영하는 客觀的인 主要指標들을 選定하여 각 대학들의 실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公開를 통해 각 대학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刺激을 주고 앞으로 평가 결과의 全面公開에 수반될 충격을 事前에 단계적 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 종합 평가를 두 번째로 실시할 단계부터는 각 대학에 대한 評價認定 等級을 判定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統制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러 評價指標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성취 목표, 즉 基準值를 제시하여 개별 대학들이 어느 정도 充足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각 지표들은 그 相對的 인 중요성을 반영하여 加重值를 부여하고 각 領域別로 合算하여 바람직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評定할 수 있다. 이때 기준 도달 정도의 評定은 순전히 계량적인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가인정 위원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거쳐 最終判定한다. 평가인정 결과는 사회적으로 공개할 뿐 아니라 會員大學들 상호간에 교육의 질에 관한 自律的인 기초로 활용하고 관계 기관에서도 選別的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학과 평가의 實務作業은 관련 학회 또는 관련 전문 기구가 主管하도록 위촉하고 평가인정 기구는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公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학과 평가는 資格證을 필요로 하는 학과와 理工系 학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評價認定 結果의 効用

대학평가인정 작업의 결과와 그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러한 評定結果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한다는前提下에서 기대되는 效用價值이다.

첫째로 대학에 대한 지원과 통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判斷基準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公共機關이나 단체들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支援額을 配定하는 데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즉 문교부, 학술진흥재단, 장학재단, 과학기술처, 한국과학재단, 산학재단 등에서 보조금, 연구비, 장학금 등을 配分하고 지원하는 데 기준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行政當局에서 교육의 質 또는 教育與件의 확보 정도를 補完 또는 개선하도록 지원하고促求하는 데 판단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문교부에서 각 대학의 교원·시설 확보 상태를 點檢하여 未沿한 대학에 대해서 기준을 조속히 充足시키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할 때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로 個別大學들이 자체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目標管理(management by objectives)를 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평가인정 결과는 각 대학들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自發的 인 노력을 傾注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행정 당국에 의해서는 물론 大學 構成員들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 대학들로 하여금 自體發展計劃을 수립하고 각 領域別로 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평가인정 결과 밝혀진 자료들을 토대로 교육의 質 및 與件 면에서 각 대학들이 자신의 相對的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학평가인정 결과는 企業과 학부모·학생 등에게 個別의 意思決定의 參考資料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측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應募者들의 출신 대학 및 출신 학과의 質的 수준을 고려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書類銓衡이나 面接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학평가인정 자료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학에 志願하거나 轉學 또는 編入學을 하고자 할 때 학교 선택의 참고 자료가 된다. 평가인정 자료는 각 대학 및 학과들이 얼마나 충실했던 교육 여건을 갖추고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客觀的인 情報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넷째로 대학평가인정 자료는 대학의 學事管理 및 高校의 進學指導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각 대학들이 轉·編入學을 관리할 때나 다른 大學에서 취득한 學點을 관리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어떤 特定한 대학에서 履修한 학점이나 學歷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公式的인 평가인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

를 할 때 학생들 각자가 지원할 대학 또는 학과를 올바로 선택하도록 돋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 각자의 學力 水準에 비추어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는 물론 자기 適性과 能力에 맞는 學科를 선택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대학평가인정 결과와 배경 자료는 대학교육에 대한 研究 및 評價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기관이나 學者들에게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興件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評價 雜據와 指標들은 이론적 측면의 연구에도 긴요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학의 교육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에 관해 理解를 돋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主要先進國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이른바 國家教育綜合評價(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提起되고 있거나와 평가인정을 통해 產生되는 여러 정보들을 활용하면 한국 고등교육의 總體的인 수준과 발전 추세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도 하리라고 본다.

대학평가인정 결과는 이처럼 여러 가지 用途에 사용하거나 反映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큰 效用은 大學行政에서의 활용이라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문교 행정 당국이 각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규모와 自律性 협용의幅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는 것은 곧 대학평가인정 제의 實效性를 확립하는 데 크게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존의 각 대학에서 학과 증설 또는 學位課程의 개설을 신청해 올 때 그것을 審查·認可하는 데 평가인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확보되고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判定을 내리게 될 것이다.

또 대학평가인정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質을 스스로 統制할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의 自律性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選別的인 자율성 부여

조치는 각 대학들로 하여금 평가인정제에의 參與를 유도하고 定着시키는 데 补償體制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수하다고 판정된 대학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학 제도 운영에 있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적용하는 사항들의 범위를 확대해 줄 수 있으며 募集定員의 策定 등 학생 정원 관리에 있어서도 裁量權을 확대·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教育課程의 운영과 學位登錄 등 學事管理 면에서도 더 큰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 여건이 良好하고 운영이 충실히 대학에 대해서는 學科改編과 행정 조직 개편에 있어 자율적인 결정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學則改正에 있어 文教當局의 승인 사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實效性 있는 것은 재정 측면에의 반영이다. 문교 행정 당국이 각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인정 결과를 토대로 差等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質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의 秀越性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教育興件이 不實한 것으로 判定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육 여건은 갖출 수 있도록 支援과 統制를並行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이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인정의 결과, 우수하다고 判定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연구비와 장학금의 지원에 優先順位를 높이며 이는 國·公立과 私立 대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 여건, 특히 교육 시설이 未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시설·설비 기준에 규정된 최소한의 교육·연구 시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自救的인 노력을 催求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시설비 예산의 優先的인 지원을 통해서 不實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며, 私立大學에 대해서는 自體負擔財源(matching fund)의 調達을前提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講究해야 할 것이

다. 최근에 대학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長期低利資金을 응자해 주는 高等教育基金의 설치 필요성이 提起되고 있는 바, 그러한 응자 규모 또는 支援額의 결정에 있어서도 평가인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있어도 最少必須的인 수준을 초과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實績 및 能力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연구용 시설이나 慎任研究教授의 擴充을 위한 지원은 평가인정 결과에 비추어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優先權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평가인정 결과 및 그 근거 자료들은 여러 측면에서 要緊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長·短期 발전 목표 設定過程에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교육 여건과 교육 활동의 여러 側面에서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자기 대학이 처해 있는 相對的인 位置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 매우 현실성 있는 座標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각 대학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自律的으로 개선하기 위한 着想(idea)을 얻는데 평가인정 자료들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평가인정의 기초 자료들을 會員大學이 제공함으로써 다른 대학들이 교육 활동을 어떻게 개선 내지 內實化해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한층 實際의in 用途로서 각 대학들은 碩·博士課程 입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특정한 他大學을 졸업 또는 履修한 者의 자격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學士課程 成績을 선발에 반영하는 경우에 대학들 간에 相對의in 差異 등을 결정하는 데 평가인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평가인정제는 각 대학의 教育與 件 및 교육 활동의 充實度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근거로 한 學校差의 고려는 妥當性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 論理的 根據 위에서 각 대학들은 轉學 또는 編入學 혜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適格者를 선발하는 등 學事管理를 함께 있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성적을 상대적으로 평

가하여 반영하는 기준으로 평가인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豫想되는 批判과 對應

대학평가인정의 결과 및 그 背景資料들은 이 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效用價値가 있지만, 그 副作用 및 限界性에 관한 우려와 접근 방법 자체에 대한 否定的인 視角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비판과 그에 대한 反論 또는 對應方案은 다음과 같다.

1)評價基準(指標)에 대한 비판

가장 근본적인 비판으로서는 대학의 교육 여건과 質을 한정된 數의 指標와 外部人士들의 賛은 현지 방문만으로 정확하게 측정·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量的 측면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특히 교육의 質的 측면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首肯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技術的인 限界性을 들어 평가인정제의 意義 자체를 全面否定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試案으로 개발된 평가 기준과 지표들을 大學社會에 미리 公表하여 衆智를 모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補完을 거듭한다면 그러한 限界性은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지 방문은 각 대학이 自體評價한 결과와 근거 자료를 확인·분석하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대학의 발전 목표와 상황이 서로 다른데 重一的인 기준으로 모든 대학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역시 거의 모든 종류의 組織評價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共通的인 기준을 적용하되 각 대학 및 프로그램의 特殊性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評定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個別指標別 점수의 기계적인 합산에 그치지 않고 평가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評定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평가 작업을 하다 보면 각 대학들이 평가 기준별로 제출하는 기초 자료 자체가 歪曲되거나 操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인정 결과의 信赖性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가능한 한 높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熱望 때문에 각 대학들이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료를 變質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 대학 운영자들의 倫理性에 호소해야 할 문제이지만, 평가 담당자들의 對應努力도 並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자료의 操作이 의심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監査權을 가진 행정 당국자와 함께 평가 위원들이 현지 방문 평가를 통해 제출된 자료들의 事實附合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평가인정 기구에서는 被評價 대상 대학들의 현황에 관한 자료와 통계들을 一貫性있게 蓄積해 나감으로써 特定年度에 조작되어 제출된 자료 및 통계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評定의 寛大化 傾向과 有名無實化

앞으로 평가인정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본격 실시되면 각 대학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與件이 不實한 대학들로부터 강한 抵抗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러 영역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국민이나 大學構成員들로부터 평판(reputation)이 크게 나빠지고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에 결정적인 惡影響를 미치게 될 것이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저항과 反作用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가인정을 담당하는 위원들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負擔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評定의 寛大化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놓후하다.

이러한 충격을 緩和시키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평가인정의 결과를 合算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피하고 그대로 公表하며, 개발 대학들은 한꺼번에 全領域에 걸친 평가를 신청하거나 一部 영역만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領域別 평가인정은

正하게 이루어지도록 與件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가의 근거 자료들을 公開하는 일이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학 종합 평가에서는 객관성 있는 主要指標들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 실태를 발표하여 공개에 따른 충격을 漸進的으로 吸收함으로써 免疫를 기르는 전략이 오망된다. 全面 실시 단계에 이르면 영역별 평정의 기초가 된 자료와 指標別 각 대학의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근거없이 관대한 評定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종합 평가의 領域別評定에 있어서나 學科評價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事態에 이르면 평가인정에 대한 관심과 刺激效果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優秀 또는 認定 판정 내에서도 가·나·다 等級을 매김으로써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의 개선을 향한 善意의 競争意識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평가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内部의 인 評定等級을 細分化함으로써 평가자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정하려는 性向을 억제하고 평가의 嚴正를 促求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3) ‘未治’ 判定大學 및 學科의 處理問題

대학 종합 평가의 경우에 總點數에 의한 종합적 認定與否의 판정은 내리지 않지만, 영역별로 ‘優秀’ 내지 ‘未治’ 판정을 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수준이 인정을 받을 만한가까지도 판단이 가능하다. 學科評價의 경우는 영역별로 加重值를 적용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等級을 구분하게 되므로 ‘未治’ 판정을 받은 學科가 밝혀지게 된다.

이러한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이나 학과는 質的 水準 면에서 사실상 公認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대학(학과)들은 認可를 取消해야 할 것인가, 문교 행정 당국이 設立當時에 세밀한 평가 검토를 거쳐 認可를 했는데 不認定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不實한 대학이나 학과가 생기게 된 것은 문교 행정 당국의 잘못된 設立認可 또는 지도·감독의 소홀에 起因하는 것이 아

닌가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인정제의 趣旨와 性格을誤解하는 테서 오는 비판이라고 본다. 대학을 신설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 설립 趣旨書', '敷地證明書', '교육 시설·설비 確保計劃書', '所要資金 調達計劃書 및 그 근거 자료', '收益用 기본 재산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서'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에 관한 確保計劃書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출 서류들을 중심으로 假認可를 한 다음 일정 기간이 經過한 후에 그러한 계획 목표와 文敎部가 제시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本認可를 한다. 이처럼 대학 신설 認可 당시의 평가는 기본적인 교육 여건 중심의 部分的인 사항에 局限되어 교육 활동의 質에 관해서는 평가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설립 인가 당시의 평가와 운영중인 대학(교)에 대한 評價認定은 성격과 평가 목표가 다르며 基準도 달라야 한다. 前者の 경우는 最少必須의 條件의 充足與否 평가이지만, 後者の 경우는 바람직한 기준에 비추어 본 평가이기 때문에 評價認定은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정의 결과 未洽하다고 판정된 대학이나 학과일지라도 認可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不實하게 운영되는 대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支援이나 統制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判斷資料를 얻고 모든 大學構成員 및 社會로부터 개선 노력의 促求하는 자극을 받도록 誘導하려는 制度的 裝置가 곧 評價認定制라 하겠다.

4) 評價認定結果에 따른 選別支援의 妥當性 論難

본디 特定한 대학(학과)에 대한 評價認定(accreditation) 결과는 사회로부터 혹은 대학들相互間에 교육의 質의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느냐 與否에만 연결될 뿐, 반드시 어떤 행·재정적인 補償이나 制裁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에 평가인정 기구에 의한 判定結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 대학에 대한 差等支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우수하다고 판정된 대

학에 대해서는 自律性 부여의 幅을 확대하고 연구비와 장학금을 優先적으로 배정하는 등 差等支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학간의 質的 水準 隔差는 더욱 深化되어 이른바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오히려 不實한 대학이나 학과에 優先支援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을 圖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만하다.

평가인정 결과를 行·財政的 차등 지원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評價認定制를 새로導入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參與를 유도하기 위한 誘因(incentive)을 제공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善意의 競爭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각 대학들이 평가인정 실시에 自發的으로 참여하려는 의욕과 自己發展努力를 助長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文敎行政當局에서 그러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통제를 직접 專擔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학들 간의 自律的協議機構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인정 제도의導入은 그러한 機能委任을 원활히 하는 태도 기여할 것이다.

差等支援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實績에 대한 補償과 不實의 救濟를 並行함으로써 최소한의 衡平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 여건이 不實한 것으로 나타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시설 및 교수 확보 기준을 充足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必須의 수준의 教育與件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 여건이 不實한 것으로 판정된 私立大學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함께 財團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를 促求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衡平為主의 지원과 並行하여 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장의 적이고 先導的 발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연구비·장학금 등의 지원에 優先順位를 높임으로써 대학교육의 秀越性을 提高하고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誘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